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방안

鄭基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장

1.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현황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민간부문이 복지자원을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자원을 민간부문이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민간복지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복지자원만으로 한정하게 되는데,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복지자원은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사업기금,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의 재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문이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민간부문이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

련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금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재원을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웃돕기성금 등과 같은 특정의 모금활동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이고, 그리고 넷째는 결연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경우이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업,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한 규모는 약 1,849억원(1995)에 달하는데, 이는 1996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쓰인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규모 1,42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전국경제인연합회(1995)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9개 기업재단의 총사업비 규모는 1994년에 3,356.1억원이었으며, 1995년에는 예산규모로 4,115.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업재단이 모두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89개 재단 가운데 26개 재단이 사회복지사업을 지

표 1. 민간의 복지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참여 유형	지원 규모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¹⁾	16,560
사회복지시설 지원(보조금 및 후원금)	82,945
모금활동에 대한 기부	73,016
결연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12,348
계	184,869

주: 1) 89개 기업재단이 1994년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한 금액이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지원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996.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한국 기업재단 총람』, 199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 1996.

표 2. 기업재단의 사업부문별 참여 현황(1994)

(단위: 백만원)

사업 부문	재단수 ¹⁾	사업비	사업 내용
교육진흥사업	66	14,584(17.2)	국내외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생에게 장학금지원
학술연구사업	47	14,287(16.8)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단체 및 교수 연구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26	16,560(19.9)	불우시설지원 및 의료비지원
문예진흥사업	8	1,718(2.0)	문예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 및 시상사업관	19	4,665(5.5)	지역행사 및 지정시상금 지급
기타	21	32,701(38.6)	시설건립 및 도서출판, 기자재 등 지원
계	89	84,515(100.0)	

주: 1) 한 재단이 여러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89개 재단 가운데 주어진 사업에 참여하는 재단의 수를 말함.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한국 기업재단 총람』, 1995.

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별로는 1994년의 사업비 3,356.1억원 중 사회복지사업에 165.6억원(4.9%)을, 교육진흥사업에 145.8억원(4.3%)을, 학술연구사업에 142.9억원(4.3%)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또 다른 중요한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 종교단체가 있다. 기독교, 천주교 및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중앙교단 차원에서 6개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1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재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사회복지부문에 지원하는 재원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연간 약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이를 다

1995년 한해 동안
716개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민간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약 261억원에
이르며, 후원금은 568억원에 이르고 있다

른 종교에까지 확대한다면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참여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 수입의 75.5%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1995년 한해 동안에 716개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민간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약 261억원에 이르며, 후원금은 568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3, 4 참조).

표 3. 사회복지수용시설 종별 총 후원금 및 시설당 평균후원금

(단위: 백만원)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합계
응답시설수 ¹⁾	69	218	103	34	30	11	1	1	467
총후원금	14,632	21,598	15,943	720	3,797	129	22	3	56,844
시설당 평균후원금	212	99	155	21	127	12	22	3	122

주: 1) 전체 716개 시설 중 무응답한 249개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996.

표 4. 사회복지수용시설 종별 총수입

(단위: 백만원, 개소)

	총수입	법인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기타 잡수입	N	
			소 계	정부 보조	외원 보조			민간 보조
총 계	270,993	25,962	230,580	204,479	8,665	17,436	14,451	716
노 인	32,844	3,415	28,248	25,495	534	2,219	1,181	135
아 동	90,535	8,791	78,423	66,161	5,118	7,144	3,321	269
장애인	73,741	4,801	64,773	56,443	2,512	5,828	4,167	152
모자/부녀	14,535	6,047	8,293	7,725	196	372	195	56
정신요양	38,611	1,607	31,937	30,759	199	979	5,067	72
부랑인	18,640	870	17,327	16,386	98	843	443	26
결 핵	382	83	284	228	8	48	15	2
나장애인	1,705	348	1,295	1,292	-	3	62	4

자료: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996.

다. 모금활동에 대한 기부 및 결연사업
을 통한 복지참여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활동은 사회복지사업기금, 재해의연금, 적십자 회비, 어린이 새생명돕기 금고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모금되는 금액 가운데 한국선명회에서 모금하는 ‘사랑의 빵 나눠주기’, 한국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쌀 운동본부가 모금하는 ‘사랑의 쌀’ 등과 같이 일부는 외국의 빈민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나, 이들을 모두 포함해 민간이 주체가 되어 모금하는 금액은 853.6억원(1995년)에 이르고 있다(표 5 참조).

결연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손 또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주민,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결연을 맺어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결연사업의 대상은 주로 시설보호자,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세대, 거택보호자 등인데, 지난 1990년에 48.8억원에 지나지 않던 후원금의 규모가 1994년에는 100억원의 규모를 넘었으며, 1995년 1년 동안에 이루어진 후원금의 규모는 123.5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5.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의 모금활동 현황

모금명칭	모금액		주요 사용분야	모금주체
	'94	'95		
계	88,716	85,364		
사회복지사업기금	17,810	16,466	사회복지사업 전분야	보건복지부, 시·도
재해의연금	22,941	16,422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회비	25,564	27,400	이재민 구호 등 적십자활동	대한적십자사
MBC어린이 새생명	4,407	3,034	난치병 어린이 지원	(주)문화방송
결핵협회(X-MAS쌀)	4,528	4,836	결핵 예방, 홍보, 진료 등	대한결핵협회
구세군자선냄비	987	1,090	영세민구호, 장애인 지원 등	구세군(가두모금)
결연사업	10,203	12,348	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국복지재단 등
사랑의 빵 나눠주기	2,000	3,500	해외빈민	한국선명회
사랑의 쌀	276	268	소년소녀가장, 시설지원, 해외동포 등	한국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쌀 운동본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2.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문제점

사회복지와 관련한 민간의 모금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고 있는데,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그리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고 있다. 이웃돕기운동에 의한 모금액은 1989년에 100억원을 넘어섰으며, 1995년에는 164.7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함에 따라 국민들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유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자원을 정부가 관여함에 따라 기업이나 시민들이 이를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모금된 재원의

사용에 대한 공개와 홍보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기부동기가 약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불우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0년의 경우 중앙모금분의 모금 내역에서 경제 4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모금된 기업체 모금분이 약 74%나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공동모금 기금에서 근로자와 개인의 비율이 약 65%가 되는 미국이나 주민과 근로자의 기부금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는 기업 등의 조직들 보다는 일반 주민과 조직의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모금 전체의 크기를 넓히고 있다.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문조직 및 인력이 마련되지 못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성금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 일본의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의 경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도 소득 금액의 25%를 한도로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외국의 공동모금제도

공동모금제도(Community Chest 혹은 United Way)는 현재 25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공동캠페인을 통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순수 민간조직이라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1860년대에 민간자선단체들의 경쟁, 이중구호 및 누락 등 비체계적인 구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선조직협회 등의 결성을 통해 자선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민간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었다. 각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 안에서 공동모금제도는 독자적으로 발전되기도 했는데, 특히 순수한 민간제도로써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미국의 공동모금제도와 민간활동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일본의 공동모금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공동모금제도가 민간의 자발적인 문제의식 및 해결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공동모금제도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하에 민간활동을 보장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고 배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못하게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민생위원(우리나라의 통·반장과 유사한 성격)에 의한 호별모금의 비중이 너무 높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활동으로서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민간이 공적 사회복지의 발달을 주도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상이하나, 민간이

순수한 민간제도로써 자발적으로 성장해 온 미국의 공동모금제도와 민간활동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일본의 공동모금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도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모금 기술 및 전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6. 일본, 미국, 영국의 공동모금제도 비교

	일본	미국	영국
공동모금기구	공동모금회	United Way	Charities Aid Foundation
모금액	¥26,579,000,000(1995)	\$3,170,000,000(1991)	£93,000,000(1992)
모금활동 단위	도·도·부·현	시	잉글랜드 및 웨일즈
모금활동 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9월 말 ~ 10월 중순	연중
모금 방법	호별 방문 68.4% 기업 기부 14.1% 이웃돕기 성금 3.6% 기타 13.9%	근로자 기부 52.2% 기업 기부 22.0% 공무원 기부 11.3% 기타 14.5%	개인 후원 24.7% 기업 성금 23.6% 개인 성금 14.0% 기타 37.7%
모금 목표액	배분신청을 바탕으로 목표액 설정	배분신청을 바탕으로 목표액 설정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약정
사용처	연말 이웃돕기 33.3% 지역사회 개발 24.4% 노인복지 17.5% 아동복지 8.9% 장애인복지 8.6% 기타 7.3%	가족서비스 22.1% 보건서비스 21.0% 청소년선도 16.6% 의·식·주보조 9.1% 보육시설 7.8% 기타 23.4%	청소년선도 17.8% 보건서비스 15.5% 문화행사 15.4% 불우이웃돕기 13.8% 환경보호 9.3% 기타 28.2%
세제 혜택	개인: 소득의 25%까지 면세 기업: 전액 손비 인정	개인: 소득의 50%까지 면세 기업: 소득의 10%까지 면세	개인 및 기업: 전액 면세

자료: 중앙공동모금회(일본), 내부자료, 1996.

4. 공동모금제도의 도입

가.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은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현행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민간의 복지재원을 정부가 관리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또는 지역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연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민간복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민간복지자원의 관리 및 운용을 민간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역 복지에의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공동모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셋째,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

서비스의 확충에 많은 제한성을 지니는 정부의 기능을 보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공동모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중심의 전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가능케 하고,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복지재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간복지재원의 모금, 관리, 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운동의 기초를 마련한다.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공동모금제도를 통한 민간복지재원의 모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제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부응하여 지방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되, 지방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상태를 감안하여 공동모금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공동모금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민간복지재원의 동원 및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서 중앙공동모금회의 기능을 지역공동모금회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한다.

다. 공동모금제도 도입방안(안)

1) 공동모금의 동원 및 관리 체계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기본형은 도입 초기에는 정부 주도형의 모습을 띄지만, 공동모금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는 안정기에는 민간 자율 또는 주도형의 모습을 갖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공동모금에서의 모금과 배분 등의 기능상의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금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기능상의 운영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적립 기금을 활용해 공동모금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책임성을 구축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매년 혹은 필요한 경우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모금에 대한 지도와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가 공동모금기구의 당연직 이사를 이사회 회원 중 일정 수의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공동모금회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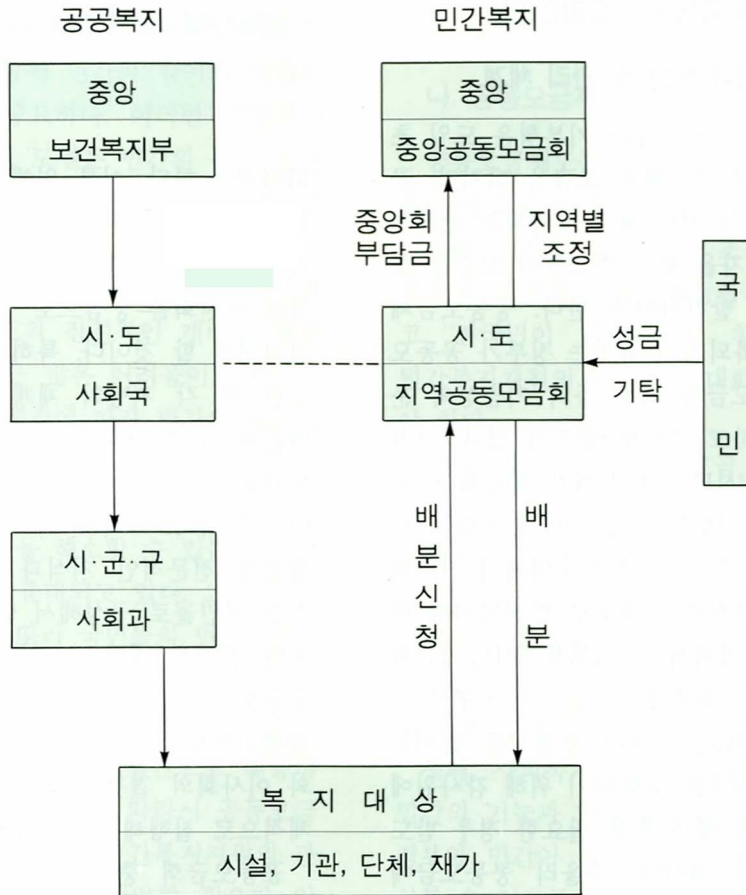
공동모금회의 조직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형태로 구성

공동모금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정부 주도형의 모습을 띄지만, 안정기에는 민간 자율 또는 주도형의 모습을 갖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과 경험과 관심을 갖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사회에는 가능한 한 각 지방의 재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노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관심을 갖는 시민들로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모금회의 조직에 있어 사무국 형태의 집행기관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 사항들을 사무국이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공동모금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관계는 연맹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고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공동모금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집중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공동모금회의 중앙조직은 지역 공동모금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 기획과 조정, 조사 연구, 홍보, 공동모금 정책의 지방 전달과 지도 감독의 역할을 수

그림 1. 공동모금의 동원 및 관리체계



행하도록 하고, 시·도간의 재정 조정 혹은 전국적 공동사업에의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모금과 배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략

을 만들어서 지역 공동모금의 방향과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경제 4단체, 각종 직능 단체들 및 노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공동모금을 지지하고 이끄는 역할 등은 중앙조직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3) 모금과 배분

모금방법과 모금기간

모금 방법은 조직 기반형이 바람직하다. 기업과 조직 및 직능 단체 중심의 조직 기반형의 모금 방식은 단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한번의 기부금으로 끝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대도시에서는 호별 모금이 큰 성과가 없어서 기업 중심의 조직 기반형 모금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과 노조 및 종업원들에게 모금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모금 기간의 설정은 모금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조직기반형의 모금방법을 선택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과 집중된 에너지를 투입하여 모금활동을 벌이고 기부금은 연중에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의 5% 범위내, 그리고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엔 연간 순이익금의 7% 범위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

우리나라도
민간 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에 대해서 개인은 소득의 25%의 한도에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은 소득의 50%까지, 기업은 조정된 전체 수입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 혜택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배분

공동모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활용되어지는 혼합 배분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별 배분과 함께 각 지역들에 있는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면 각 지역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는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모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금의 원천인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배분임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공동모금의 배분에 있어 지정모금 (designated donation)에 의한 지정배분 (designated allocation) 제도의 도입을 고려

해 볼 수도 있다. 지정배분은 모금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규모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특정 광역시나 도에 대해서, 특정 광역시나 도에 속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출신 지역과 거주지

역에 대해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금 및 배분 활동의 철저한 공개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모금 방법 및 현황, 운용의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신 간 안내

Research Monograph 96-09

**A New Vision of National Welfare
toward the 21st Century:
Harmonizing Global Trends and Traditional
Values in Korea**

Hacheong Yeon

Research Monograph 96-10

**Achievement and Challenges of
the Population Policy Development
in Korea**

Namhoon Cho

